

1. 개정이유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허가신청 시 실질적 심사를 위해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른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서 허가신청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신고서식과 허가신청 서식 분리(안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7호의2 서식)

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규정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신청 규정을 분리하고, 외국인등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서식 및 허가증도 신고서 서식 등과 별도로 규정

2)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에서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나.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섬 지역 및 군부대주둔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 섬 지역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 요청 권한을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을 “신고를”로,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고 또는 신청을”을 각각 “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중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또는 신청서 제출”을 각각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신청을”을 각각 “신고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의3(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요청권자)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 국방부장관(다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 섬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국방부장관
3.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국가

정보원장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신고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공급계약 []전매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취득면적: m²)/(지분: 분의) (대지권비율: 분의)	
⑩건축 물 (용도 :)/(취득면적: m²)/(지분: 분의)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은
아니
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고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임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을 적습니다.
-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부동산·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법인명) (한글) (영문)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①주소(법인소재지)								
신청 사항	②취득 상세원인								
	③원인 발생일자			④취득 가액(원)					
	⑤ 토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취득면적 (㎡)	지분	용도지역 · 용도지 구
					법정	현실			
		토지 이용 현황	⑥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종류, 내용 등)						
	⑦그 밖의 이용현황								
	⑧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제출서류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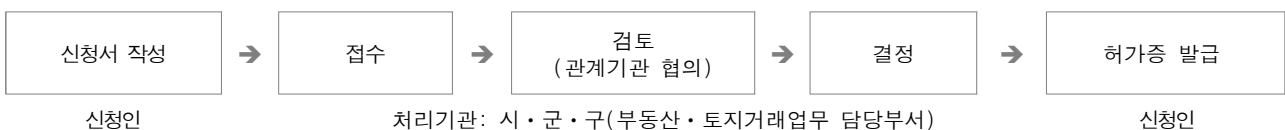
1.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허가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① “주소”란은 실제 거주 중인 주소를 작성하되, 실제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현지어로 작성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소는 대한민국에 법인의 사무소 또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무소나 사람의 주소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② “취득 상세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의 계약원인을 적습니다.
- ③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체결일, 증여 결정일 등 계약원인을 적습니다.
- ④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와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⑤ “토지에 관한 사항”란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법정 지목, 현실 지목 및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 ⑥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년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 ⑦ “그 밖의 이용현황”란에는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외 나대지, 도로, 임야 등 토지이용현황을 기재합니다.
- ⑧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지역은 작성 제외)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한글) (영문)		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부부 [] 직계존비속(관계:) [] 그 밖의 관계()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종류:)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토지보상금 원	
		⑧ 소계 원			
	차입금 등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토지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대출 종류:)	원	
		⑩ 그 밖의 차입금 원		⑪ 소계 원	
	[] 부부 [] 직계존비속(관계:) [] 그 밖의 관계()		원		
⑫ 합계	원				
⑬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은
구
도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고관청에 허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이 서식은 별지 제6호의2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신청서의 제출 여부를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 “자금조달계획” 란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허가신청서 상의 토지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⑦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 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로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증여·상속” 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6.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 에 √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 에 √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8. ⑦ “토지보상금” 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⑦란에 기재합니다.
9. ⑧ “소계” 란에는 ② ~ ⑦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⑨ ~ ⑩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1.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2. ⑩ “그 밖의 차입금” 란에는 ⑨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3. ⑪란에는 ⑨ ~ ⑩란의 합계액을, ⑫란에는 ⑧란과 ⑪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⑬란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예시: 주거용,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임대용, 도로이용, 현상보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제 호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신고 사항	취득 원인		상세 원인	
	원인 발생일자		취득 가액(원)	
	종류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공급계약 []전매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소재지			
	토지 (지목 :)/(취득면적: m ²)/(지분: 분의) (대지권비율: 분의)			
	건축물 (용도 :)/(취득면적: m ²)/(지분: 분의)			
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 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한글) (영문)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주소(법인소재지)									
신청 사항	취득 상세원인								
	원인 발생일자				취득 가액(원)				
	토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취득면적 (㎡)	지분	용도지역 · 용도지 구
					법정	현실			
		토지 이용 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종류, 내용 등)						
	그 밖의 이용현황								
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u>신고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u>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u>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u> 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 ----- <u>신고를</u> ----- ----- ----- ----- ----- <u>신고서</u>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u>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u>신고 또는 신청을</u>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 <u>신고를</u> ----- ----- ----- ----- ----- ----- -----.
③ 제1항에 따른 <u>신고 또는 신청</u>	③ ----- <u>신고를</u> -----

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
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 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
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
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
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
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
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 신고확인증 -----

-----.

④ -----

----- 신고서 -----

-----.
-----.

1. ---- 제출-----

2. ---- 제출-----

⑤ ----- 신고를 -----
----- 신고
를-----

-----.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
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의3(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요청권자)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 국방부장관(다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 섬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국방부장관

3. 「통합방위법」 제2조제13

호의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

역: 국가정보원장